

토 론 문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거래 관계에서의 플랫폼 사업자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발표자분들이 자세히 언급해주신 것처럼 각국 정부가 관련 감독과 규제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률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이는 가운데,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 유형과 거래 관계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거래, 콘텐츠, 서비스 거래,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고, P2B, P2C 등 거래 관계도 다양합니다. 플랫폼 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는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함에 따라서 하나의 법률에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모든 규제 사항을 담기 어렵습니다. EU, 미국도 입점 업체와의 공정거래, 이용자 보호 측면 등에 따라 법률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별 목적을 구체화하고, 해당 법률의 규제 목적에 맞는 규제 대상을 유형화한 다음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EU 디지털시장법안은 게이트키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핵심 플랫폼 서비스¹⁾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만 한정된 다음,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 자산 가치, 매출액,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수범자가 매년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U 디지털서비스법안은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로 구분하고 서비스 형태와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의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랫폼 법안 패키지는 빅테크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적용 대상을 좁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연간 순매출액 또는 시가 총액이 6천억 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수가 5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간 활성 이용업체 수가 10만 개 이상이며,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거나 직접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위한 핵심 거래 파트너(critical trading partner)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사실상 GAFA(Google, Amazon, Facebook(Meta), Apple), 즉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빅테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a) 온라인 중개 서비스, (b) 온라인 검색엔진, (c)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d)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e) 전화번호와 무관한 개인 간 통신 서비스, (f) 운영체제, (g)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h) 광고 서비스

이와 비교해볼 때 현재 발의 또는 제출된 플랫폼 관련 법률은 법률 목적에 맞게 규제 대상 및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의 적용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은 (i)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나 (ii) 해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대상이 100여 개에 이르고, 그 중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적용 요건을 포괄위임하는 것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EU나 미국과 같이 규제 목적별로 별도 법률을 마련하며, 각 목적에 맞는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입법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제한적 집행에만 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제 체계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 집행에 그치는 현상을 경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 방안, 해외와의 공조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